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송시설 이용요금 할인〉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42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군 할인 현황	6
2. 노인 및 장애인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희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30.
3. 회부연월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나 사적 여행으로 KTX나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5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바 있음.

2015년 국정감사에서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 군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할 때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동 제도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1조의3(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현재 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철도나 도시철도의 이용시 요금을 감면받고 있음.¹⁾

이와는 달리 병사들의 경우 철도요금은 철도공사와 군의 협약에 따라 철도요금 할인(10%)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²⁾ 별도의 법적

1) 참고자료 1. 노인 및 장애인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

2) 병장 이하 군 장병, 카투사, 의무경찰, 의무소방대를 대상으로 KTX 이하 모든 열차에 대해 10%의 할인 혜택 등을 주고 있음.

근거가 없어 경영부담에 따른 철도공사의 방침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제도가 변경 및 축소 운영될 수 있음.

실제 군인들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2015.1.1.부로 폐지되었다가 군인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사기진작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동 제도를 재도입(2015. 9. 25.)한 바 있음.³⁾

한편, 철도요금과 달리 도시철도(지하철)의 경우에는 군인에 대한 별도의 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 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군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철도요금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는 병사들을 중심으로 철도요금을 할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장교,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군인으로 확대하고

참고자료 2. 군 장병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 현황

3) 국회사무처, 「2015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2015.10.8.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문제와 다른 공무원(경찰·소방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철도와는 달리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현재 군인에 대한 할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까지 군인
할인제도를 확대할지 여부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상황과 할인
제도 운영에 따른 해당 운영자의 손실 부분에 대한 부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일례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낮은 운임과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무임수송 손실 증가 등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차입금 증가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⁴⁾

철도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철도운임 감면 등에 따른 감면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도시철도운영자는 별도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⁵⁾

4)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기준 누적적자 17조 7천억원, 연 당기순손실이 6,420억원이며 이중 무임
수송손실이 연 3,152억원(당기순손실의 49.1%)임.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
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
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
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관계 부처 및 기관 등의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군인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이용인원 할인금액만큼 국가의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가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관계기관(기재부,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의 의견 및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현재 군 장병 대상 철도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며, 특히 병사의 경우 병 휴가비 내 왕복교통비 포함 지급 중으로 ('24년 예산 36,331백만원) 개정안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철도공사는 병사를 대상으로 운임감면제도(10%)를 기(既)운영 중이며, 별도 영업할인으로 만13세~만33세의 경우 10~4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바, 기존의 할인제도로도 충분히 법의 개정 필요성을 충족한다는 입장이고, 또한 개정안에 따를 경우, 타 직업군(경찰, 소방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국고의 부담이 가중되는바, 필요시 국방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서울교통공사는 군인에 대한 도시철도 이용요금 지원이 법률에 따른 국가정책에 해당하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이용요금 할인에 따른 요금손실은 원인제공자인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서울 지하철은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므로 군인복지에 필요한 비용은 서울시(공사) 자체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서울교통공사는 낮은 운임과 무임수송 손실 증가 등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함. 현재 추가 요금손실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정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1. 군 할인 현황

• 일반철도

- 군 장병 할인
 - 할인대상: 병장 이하 군 장병, 카투사,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 대상열차: KTX 이하 모든 열차
 - 할 인 율: 10%
- 군 후급 할인: 추후 정산(후급)을 조건으로 군 병력의 이동, 출장 등 공적인 업무로 철도 이용(수송)할 때

구 분		변경후 (요일관계없이)		비 고
		KTX	일반열차	
후급	군전세열차	10%	10%	
	건설열차 (부정기, 임시, 병원, 혼합열차)	-	20%	
	TMO취급(개인, 단체)	15%	15%	토·일·공휴일 제외

• 광역철도

- 군 장병 할인
 - 할인대상: 병장 이하 군 장병, 카투사,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 대상열차: ITX-청춘
 - 할 인 율: 10%

2. 노인 및 장애인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

○ 노인의 철도운임 할인 관련 법령(「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65세 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비 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의 철도운임 할인 관련 법령(「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시설의 종류	감면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나. 새마을호·KTX	100분의 50 100분의 5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 ①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 ③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